

추석 앞두고 고향 전북의 품에 안긴 파독 광부와 간호사

“외로움·서운함 눈 녹듯 사라졌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단이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독일 현지에서 파독 광부, 간호사들과 고향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베를린 한인 성당. 성당의 입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파독의 역사와 손잡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한국어와 독일어가 한꺼번에 들리는 가운데 청명한 하늘만큼이나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백발의 동양인들. 이들은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주최한 파독 광부간호사 초청 간담회를 찾은 재독 한인회 교민들이었다. 60~70년대 어린 나이에 절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로 대장정을 떠난 광부와 간호사 150여 명은 어느덧 평균 연령 80대의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행사를 앞두고 삼삼오오 모여 대기하고 있던 이들은 전북자치도 관계자들이 입장하자 앞다퉈 나와 손을 맞잡고 고향 소식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 귀를 쫓겨 세웠다.

행사장에 입장한 김 지사는 “제가 태어난 60~70년대는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보릿고개로 대식구는 늘 배고픔을 견디며 배워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살았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그 희생이 가족과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 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베를린 한인 성당. 성당의 입구에서 파독 광부·간호사들과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단이 고향의 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자치도, 정 나눔 행사… ‘희생·노고 기억’ 감사

간담회·파독 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계기로 교류 확대

이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케이팝을 비롯한 한국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간 것은 바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말하자 일부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교민 채수용(군산 출신)씨는 “25살이었던 1971년에 어려운 가정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신문광고를 보고 무작정 독일로 도착했다”면서, “언어 장벽과 하루 8시간씩 이어지던

지하 탄 캐기 작업으로 정말 고생했다”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교민 김광숙(전주 출신)씨는 “24살 나이인 1970년에 간호사로 파견돼 청춘을 이곳 베를린에 물었다”면서, “그 시절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 가족과 조국에 도움이 되었다는 자긍심을 갖고 서로 힘을 모아 살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민 이석주(김제 출신)씨는 “1974

년에 혼자서 독일로 날아와 오랜 시간 광부일로 먹고 살았다”면서, “명절 때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차례도 지낼 때 무척이나 그리웠고 부러웠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한인회장 이영기씨는 “김 지사와 일행분들이 먼 베를린까지 날아와 간담회를 열어주시니 그간 외롭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자치도가 준비한 ‘판소리 공연’과 ‘서예 퍼포먼스’, ‘한지 공예체험’과 재독 한인회 준비한 승무와 고북기타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시종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조국에서 찾아온 공연단의 전통공연을 보며 향수를 달래고 추석 분위기와 고향의 정을 만끽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빈곤을 구한 ‘개척자’들이 파독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예우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우호 관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와 도의회는 지난 5월 파독 근로자의 희생과 노고를 기념하고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도는 이번에 본격화된 독일과 교류 협력을 계기로 파독 근로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민간외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항의하며, ‘검찰 수사권 남용, 차라리 검찰은 문닫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차라리 문닫아라”

민주 이성운 의원,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전주지검 앞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항의하며, ‘검찰 수사권 남용, 차라리 검찰은 문닫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전주지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

령의 전 사위가 타이스타켓에 전무로 취임한 것과 관련해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해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

남원 경비행장 현지답사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염봉섭,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 위원들은 지난 5일 남원 경비행장에 대해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을 찾아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보고 받고 부지의 영구적 이용 방안과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에 대한 주변 축산 농가 민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경관 개선과 경비행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염봉섭 위원장은 “투자 대비 최대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비한 시설을 정비하고 필요한 허가나 승인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애에 만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의회 임사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지난 6일 제264회 임사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등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내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중선 의원)과 봉동읍 구안리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강경숙 의원)을 채택했다.

김경진 의장은 집행기관에 “추석연휴에 시민들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재해 예방 및 의료·교통 편의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12년새 41배 폭증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딥페이크 게시물 25%는 삭제 안 돼

민주 한병도 의원 “선거운동 방식 급변에 선관위 대응 적절 의문”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제22대 총선 7만 4,172건으로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 25%는 삭제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제20대 총선 1만 7,430건, 제21대 총선 5만 3,904건, 제22대 총선 7만 4,17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제19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이 720건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제20대 총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가 5,663건, 3만 3,007건, 6만 1,565건으로 선거마다 폭증했다. 반면, 선관위가 취하는 조치는 대다수 삭제요청에 그쳤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제20대 총선 329건에서 제21대 총선 188건, 제22대 총선 147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딥

페이크 이용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388건 중 97건(25%)은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딥페이크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기업 운영 매체에는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풀이 된다.

한병도 의원은 “온라인상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며 사이버 선거법 위반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선거운동 방식이 급변하고 있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특히 딥페이크 등 신기술이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에 대비하여, 선관위는 조치 강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늘어만 가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예방책 모색

서난이 도의원, 정책토론회 열어… 학교시스템 보완·가해자 처벌수위 상향법 개정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6일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범죄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이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사회관계서비스망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과 예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전북디지털성범죄특별화상담소 여혜지 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지유 민주시민사회교육과장, 박주원 변호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손광혁 보호계장, 전교조 전북지부 양민주 성교총상담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여혜지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상담 건수가 늘어



나고 있고, 여성이 대부분인 가운데, 가해자·피해자의 연령이 10대와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다”며, “같은 반 여학생, 담임교사를 성적 대상으로도 구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 성교육과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및 가해자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양민주 소장은 “여전히 학교가 성평등 근무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 성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박주원 변호사는 “디지털 기

술의 발전, 양육환경의 변화로 범죄의 피해자·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스템 보완,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 처벌수위 상향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으로 나선 서난이 도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가 확인이 되었고,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거버넌스를 견고하게 다져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검찰 수심위,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불기소 결론

오늘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가운데 사건관계인인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9일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심위

개최를 지시한 바 있는데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 소집은 이와 별도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부의심의위의 심의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뉴시스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

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

민주 윤준병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6일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지목하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현행 의료급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지급 보류 처분 후 무죄 판결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보류가 된 의료기관이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개정안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해 해당 의료급여비용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